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급여팀장 백영기 [6581] 대리 고영옥 [6573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3962호

시행일자 2018. 2. 7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알림

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2호(2018. 3. 26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3호(2018. 3. 27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개정 발령하고 이어 정정 공고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 내 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내 [상담실]-[무료보험상담실]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복지부 고시 2018-52호]
○ 개정내용
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신설 (별지 1)
* (주요내용) 아이클루시그정 15밀리그램(백혈병 치료제) 등
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변경 (별지 2~5)
"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[별표1]" 중 삭제 (별지 6)

(대의협 제813-13962호) 시행일자 2018. 3. 27

○ 시행일

별지 1, 별지 2 및 별지 6 : 2018년 4월 1일

* '별지1'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'붙임 1'에 기재된 날

별지 3 : 2019년 2월 1일

별지 4 : 2019년 3월 1일

별지 5 : 2019년 3월 21일

[복지부 고시 2018-53호]

○ "별지2"에 기재된 약제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

구분	제약사명	제품코드	제품명	정 정 전	**정 정 후**	변경사항
별지 2	(주)씨엠지제약	648600324	로 마 졸 크 림 (클 로 트 리 마 졸)_(0.3g/30g)	960	1,000	사 무 착 오 에 따른 상 한 금 액 정 정

그외 사항은 변동 없음

○ 정정고시 시행일 : 2018년 4월 1일

붙임: 1. 보건복지부 고시 2018-52호 고시 전문
2. 보건복지부 고시 2018-52호 고시 별표 1 개정안,
3. 보건복지부 고시 2018-53호 고시 전문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